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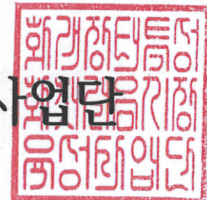


화개장터 오감만족 가을축제 사업

과업지시서

2021. 09.

화개장터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



목 차

- I . 과업개요 및 제안
- II . 과업 및 관리
- III . 일반사항
- IV . 결과보고

I. 과업개요 및 제안

1. 개요

- 가. 용역명 : 화개장터 오감만족 가을축제 이벤트 사업 용역
- 나. 용역기간 : 2021년 9월 ~ 10월 (명확한 일정은 협의 예정)
- 다. 용역내용 : 오감만족 가을축제
- 라. 총사업비 : 이천만원 (20,000,000원 / 부가세 포함)
-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바. 공고기간 : 2021. 09. 07 ~ 2021. 09. 15.
- 사. 문의처 : 화개장터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 (문의:055-884-7966)
- 아. 제안 접수 일시 : 2021. 09. 15(수) 14:00~17:00
- 자. 제안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시간내 일괄접수
(화개장터 특성화사업단, 화개 공용버스터미널 2층)
- 차. 제안서 심사
 - 일시 : 2021. 09. 17 (금) 14:00
 - 장소 : 화개장터 특성화사업단 사무실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업체 개별 통지함
- 카. 우선 협상자 발표: 심사일 기준 5일 이내, 우선 협상자 개별 통보 (탈락자 통보 생략)

2. 목 적

대한민국 대표 관광형 전통시장인 “화개장터만의 특화된 오감만족 가을 축제” 로 관광객과 상인,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화개장터 홍보가 목적

3. 과업의 범위

- 가. 공간적 범위 : 화개장터 내
- 나. 시간적 범위 : 2021년 9월 ~ 2021년 11월 중, 총3일간 실시
- 다. 내용적 범위
 - 가을축제 기간 중 문화공연 및 버스킹, 전통놀이 등의 다양한 이벤트 진행
 - 지역 관광지와 지역단체 연계한 관광객 방문 및 체험 이벤트 진행

- 지역관광 특화 판매전
- 화개장터 플래그십스토어 온라인 홍보 및 판매 이벤트
- 가을축제 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 예산안

(단위: 천원)

| 사업구분 | 프로그램 | 세부항목 | 단가 | 수량 | 단위 | 금액 | |
|-------------------|--------------|------------------------|------------------|-------|----|-------|-------|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 오감만족 가을축제 | 리플렛 및 쿠폰, 상품권, 현수막, 배너 | 1,500 | 1 | 1식 | 1,500 | |
| | | 문화 행사 | 행사준비비(음향, 행사보험등) | 2,500 | 1 | 1식 | 2,500 |
| | | | 사회자 진행인력 | 1,000 | 3 | 1회 | 3,000 |
| | | | 버스킹 및 문화공연 | 3,000 | 3 | 1식 | 9,000 |
| | | 경품 | 4,000 | 1 | 1식 | 4,000 | |
| | | 소 계 | | | | | |
| 계 | | 20,000 | | | | | |

4. 제안 내용

1) “오감만족 가을축제” 이벤트 개최·운영

가. 오감만족 가을축제 과업 제안 방향

| 구분 | 제안 방향 |
|-------|---|
| 과업 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관광 특화상품 판매 이벤트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 산나물, 농산품 꾸러미 상품 판매전, 플래그십스토어를 통한 화개장터 대표상품 구매시 무료 택배 배송 실시 · 꾸러미 상품 판매 2만원 이상 결제시 경품 지급. ○ 한국 대표 관광형 화개장터 온·오프라인 홍보이벤트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 고객 및 상인 SNS 홍보시 경품 증정 ○ 주요 지역 관광지 연계한 체험 및 방문고객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 쌍계사, 최참판댁 등의 관광객이 화개장터 방문시 이벤트 제안 ○ 화개장터 체험 이벤트 등 ○ 문화공연 행사 진행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 버스킹, 문화 공연, 전통 놀이 등 ○ 경품지급 : 단위 이벤트 진행에 따른 경품(화개장터 농산물 외) 지급 ○ 사전홍보 방법 및 온라인 홍보 방안 제안 ○ 행사 용역시 행사보험(주최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

- 나. 관광객과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마련, 고객과 함께 하는 문화 공연 추진
- 다.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리플렛을 활용한 홍보
- 라. 상시, 이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집객 및 고객 유치

2) “오감만족 가을축제” 이벤트 인력 운영

- 가. 오감만족 가을축제 이벤트 참여 스태프의 안전 및 안내 교육
- 나. 모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동선 및 진행 계획
- 다. 오감만족 가을축제 이벤트 소요 물자 관리 및 안전 교육

5. 일반사항

- 가. 발주처와 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함.
- 나. 본 사업은 “오감만족 가을축제” 이벤트 사업에 대한 현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 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안전성 미확보에 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은 행사업체에 있으며 이에 대한충분한 대비를 해서 안전한 행사를 진행해야 함.
- 라. 본 제안요청서에 지시된 사항은 행사업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명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단의 해석에 따름.
- 마. 수급자는 계약 즉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행사 시나리오 정리 및 공연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 운영에 임해야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 등을 요청할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 바. 수급자는 확정된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으며 다만 천재 지변 및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 수행이 힘들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연 일정 및 공연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6. 특수수행지침

- 가. 사업 수행 일정은 필요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나.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 차이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다. 수급자는 발주자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 라. 개발한 행사 내용 및 콘텐츠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마. 행사 기획자는 수시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의논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필요시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보고서 및 제안서를 발주자가 원하는 표준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바. 보고 및 제안은 사업 시행 전 표준화된 양식으로 제안하고, 보고는 행사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업 내용의 수정 및 개선, 보강 요구에 대하여 수급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7. 과업 수행조건

가. 수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무대 준비, 음향 준비는 물론 필요시 무대 위 비(햇빛) 가리개, 행사 관람객을 위한 의자 및 햇볕 차단용 위한 파라솔, 천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다.

나. 이 외에 과업 수행을 위해 준비하거나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8. 과업수행 진행인력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적정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안전 및 질서유지 인력

나. 사업수행인력

II. 과업 및 관리

1. 계약의 해지 및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급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발주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본연의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 수급자의 업무 추진사항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수급자는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수급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자가 산출한다.

라.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2. 업무협약

가. 수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자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나.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발주자와 수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변경·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마. 수급자는 제안 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변영회, 사업단과 협의 및 보고, 자료 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과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특성화 첫걸음시장육성사업의 세칙 기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다.
- 사.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 사항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아. 세부 추진일정 및 디자인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자.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제출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 일반사항

- 가.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나. 본 과업 참여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성실 또는 부당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다. 본 과업과 관련해 제작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판권 등의 제반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며, 수급자는 무단으로 산출물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3자와의 초상권, 제작물의 판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마. 발주자는 향후 본 과업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편집하여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수급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바. 성과품 납품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체의 추가 비용지급 없이 수급자의 책임 하에 수정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발주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자는 감독원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아. 수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 모든 일체의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수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자. 수급자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등 기업의 주요사항 변경 시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차. 세부적 사항에 관한 이견 발생 시 처리내용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그 외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4. 보안사항

- 가.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한다.
- 나.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책임이 있고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한 보안규정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발주자가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라. 과업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 마.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 바. 보안사항 불이행 및 보안유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보안 유지에 소요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Ⅲ. 일반사항

1. 과업의 범위는 화개장터 “오감만족 가을축제” 이벤트사업 전반에 관한 제반업무이다.
2. 사업발주처(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 (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그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인원 현황 및 명단, 비밀유지계약서, 안전사고 책임각서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 완료시점에는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5. 과업수행자인 수급자는 당해 행사에 임명된 대리인을 두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행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행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과업 수행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본 과업에 관련하여 수반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도 발주자에게 물을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인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사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지침 및 제반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9. 본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 및 보고회 등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0.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보안사항
 - 가.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한다.
 - 나.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책임이 있고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한 보안 규범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발주자가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라.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 마. 보안사항 불이행 및 보안유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보안 유지에 소요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12.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가. 수급자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 나.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작업을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VI. 결과보고

1. 결과보고

결과 보고는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 보고한다.

2. 보고서 제출

가. 보고서 제출 시기

- 1) 착수보고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2) 결과보고서 : 과업 완료 후 7일 이내

나. 보고서 및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1) 착수보고서 : A4 규격, 1부
 - 세부과업수행방법, 추진일정,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2) 결과보고서 : A4 규격
 - 작업 전, 작업 중간, 작업 후 사진을 수시로 촬영하여 보고서 작성시 사진 첨부 하여 보고
 - 작업 진행 사진 파일은 CD 또는 USB로 제출

2021년 9월

화개장터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단